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8 호

2007년 6월 15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2007-689호(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1호(일반용역 입찰공고(중요기록물 자료관 D/B건축 사업)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3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5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4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6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5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7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6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6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7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1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7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39호(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9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4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41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4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47호(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보상계획 공고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1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52호(시설공사 입찰공고(남동구 장수동 131-5번지일원)) 118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33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창자이아파트)) 12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남동구 규칙 제 689 호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예산안”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동조 제3항중 “예산안”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중 “결산”을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결산이”를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결산을”을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남동구 기금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1 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 사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설계금액 : ₩499,997,000원(추정가 454,542,730원, 부가세 45,454,270원)
- 과업물량 : 1,008,000면(문서 808,000면, 도면 200,000면)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6월 12일(화요일) 09:00 ~ 06월 21일(목요일) 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6월 21일(목요일) 15: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합니다.
- 최근3년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분류·정리 하여 기록물 DB구축 사업으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과 단일계약으로 2억원이상 구축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제적부 및 토지대장 전산화는 제외 함)로 합니다.
(용역실적 증명서 2007.06.21(목)14:00한 경리팀으로 종이문서 제출)

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6.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시 예규 제2006-430호, 2006.03.20)에 의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499,997,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민원지적 과 기록물관리팀(032-453-244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6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지구가 두개의 서로 다른 법정동(간석동, 구월동)을 포함하고 있어 입주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구월동 일부를 간석동 행정구역(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간석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 내 구월동 71의51번지의 22필지(69,707.2㎡)를 간석동으로 편입함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032-453-223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지구가 두개의 서로 다른 법정동(간석동, 구월동)을 포함하고 있어 입주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됨으로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구월동 일부를 간석동 행정구역(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월동 71의51번지 외 22필지(69,707.2㎡)를 간석동으로 편입함

☐ 본 문 : “별지”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지”

☐ 참고사항 : 경계변경 관련법규 발췌문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의 [별표] 중 구월동 및 간석동의 관할구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28의4, 13, 629의2, 1068의2 제외) 간석동으로 편입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 제외
	간석동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225-23, 225-88, 225-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제외) 구월동에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연 행			개 정 안		
구별	명칭	관 할 구 역	구별	명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28의4, 13, 629의2, 1068의2 제외)	남동구	구월동	----- ----- 간석동으로 편입한 구월동 71 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 36, 72의38, 72의41, 72의43~ 47, 72의49~55, 72의29 제외
	간석동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225-23, 225-88, 225-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 제외)		간석동	----- ----- 구월동에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 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 36, 72의38, 72의41, 72의43~ 47, 72의49~55, 72의29 포함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3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2007.05.1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6. 12 ~ 2007. 6. 19 (7일간, 토,일요일 포함)

2. 사업내역

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5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한화 대표 남영선 ☎ 02)729-1883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02)2022-5131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02)729-2468 나. 설계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안길원 ☎02)3011-1400 다. 시공자 : (주)한화건설 대표이사 김현중 ☎02)729-2468 라.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 5블럭 ○ 대지면적 : 67,099㎡ ○ 건축연면적 : 185,058.926㎡ ○ 규모 : 공동주택 8개동(지하 2층/지상 40층) ○ 세대수 : 1,052세대 ○ 공사기간 : 2007.06.25 ~ 2010.12.24.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 2007.02.23 ○ 사업계획승인일 : 2007.06.05. 마. 사업비 ○ 총 사업비 : 411,964,469천원 ○ 대 지 비 : 177,379,393천원 ○ 총공사비 : 172,089,115천원 -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0원 - 주택 감리대상 공사비 : 146,929,687천원 - 전기공사비 : 16,193,585천원 - 소방, 정보통신공사비 : 8,965,843천원 ○ 간접비 : 55,533,235천원 ○ 부가가치세 : 6,962,726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예비기준:3,895,458,633원 (주택감리대상공사비의 2.65124%) 감리최고예비가각: 3,895,458,633원 감리최저예비가각: 3,661,731,115원 ① 3,895,458,633원 ② 3,878,763,118원 ③ 3,862,068,998원 ④ 3,845,374,761원 ⑤ 3,828,679,543원 ⑥ 3,811,984,325원 ⑦ 3,795,289,107원 ⑧ 3,778,594,784원 ⑨ 3,761,900,250원 ⑩ 3,745,205,032원 ⑪ 3,728,510,804원 ⑫ 3,711,815,685원 ⑬ 3,695,120,467원 ⑭ 3,678,425,249원 ⑮ 3,661,731,115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가. 건축공사 : 2007. 06. 25 ~ 2010. 12. 24

나. 토목공사 : 1차 2007. 07. 01 ~ 2007. 11. 30

2차 2010. 07. 01 ~ 2010. 12. 24

다. 기계설비공사 : 2007. 08. 01 ~ 2010. 11. 30

※ 주요 공정계획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감리원 배치계획은 위 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4. 용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 명단 기입)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사업주체, 감리자 명기

③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감리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시고 별지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는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제4호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 ⑤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경우)
- ⑦ 교체빈도(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⑧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⑨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확인)
- ⑩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⑪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 건축사보 증명 :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분도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감리자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 이 기준(건설기술개발,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분에 대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 함.
-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협회에 사실조치로 평가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다만,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함)
- ③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① ② ③ ④ ⑤ 를(1건 이상)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④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접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⑤ 감리자(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등을 평가시,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⑦ 비평가 감리원은 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처리함[단, 신규감리원은 자격요건을 평가하므로 순서 적용 제외(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구분하지 않음)]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2007. 06. 20.(수) (09:00~12:00) (시간엄수)
-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6.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 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5.10)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여,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① 공고 ⇒ 서류접수 ⇒ 평가(자기평가서·제출서류) ⇒ 예정가격 추첨·입찰서 개봉/순위 선정 ⇒ 이의 접수 및 열람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2007. 6. 22. (금) 18:00까지 제출할 것)
- ③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통보는 유선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다. 이의신청 및 열람

- 기 간 : 2007. 06. 20 ~ 2007. 06. 25

(토·일요일 포함하며 토·일요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감리지정신청자(위임장 첨부한 대리인 포함)가 방문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장소 및 열람방법 : 건축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함.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 감리원 현황

●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7. 예정가격 등의 추첨일시

가. 일시 : 2007. 6. 20(수) 13:00부터(5, 6, 7, 9, 10블럭 순으로 개찰)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소강당

※ 예정가격 추첨 시 필히 참석하고 연명부에 인감날인 할 것

※ 미참석 또는 연명부에 인감날인 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7-163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총괄감리원 : 상기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등급이상 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함.

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라. 비상주감리원

①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이상인 1명만 인정함

② 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이 등급미만인 경우 “실격”이며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0”점 처리 함.

바.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유동비율 : 253.69%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10. 기타 유의사항

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5, 6, 7, 9, 10블럭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아파트 신축공사는 감리원을 블럭별 중복 접수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감리원이
2개 이상 낙찰 시 1개 블럭만 인정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
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및 직책란의 감리경력
(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
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
율을 적용 합니다.

- 2)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을 기준으로하여 공사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감리수행 기간을 산정한 실적을 인정함.
 - 3)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 4)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2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바. 예정가격 산출은 원단위 미만은 버림
- 사.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2점)을 부여 합니다.
- 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판정함. 또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평가대상감리원 이외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신규감리원 포함)의 명단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거.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동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며. 남동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 버.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행정정보>고시공고 참조
-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담당자 유성근 ☎032-453-2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준공일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비평가(1)	건축					
비평가(2)	기계 설비					
비평가(3)	토목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제정상태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 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 체 빈 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 령 제 한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 상 주 감 리 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 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04		'04	
		'05		'05	
		'06		'06	
		합계		합계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4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2007.05.1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6. 12 ~ 2007. 6. 19 (7일간)

2. 사업내역

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6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한화 대표 남영선 ☎ 02)729-1883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02)2022-5131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02)729-2468

나.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세한 ☎02)3438-8038

다. 시공사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02)729-2468

라.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 구역 도
시개발사업 6블럭
- 대지면적 : 55,700㎡
- 건축연면적 : 157,120.255㎡
- 규모 : 공동주택 7개동(지하 2층/지상 37층)
- 세대수 : 960세대
- 공사기간 : 2007.06.25 ~ 2010.12.24.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 2007.02.23
- 사업계획승인일 : 2007.06.05.

마. 사업비

- 총 사업비 : 328,102,107천원
- 대지비 : 147,930,419천원
- 총공사비 : 142,829,577천원
 -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0원
 - 주택 감리대상 공사비 : 121,947,893천원
 - 전기공사비 : 13,440,263천원
 - 소방, 정보통신공사비 : 7,441,421천원
- 간접비 : 37,299,262천원
- 부가가치세 : 42,849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예비기준: 3,245,326,107원
(주택감리대상공사비의 2.66124%)

감리최고예비가격 3,245,326,107원

감리최저예비가격 3,050,606,540원

① 3,245,326,107원

② 3,231,417,765원

③ 3,217,509,270원

④ 3,203,600,847원

⑤ 3,189,691,479원

⑥ 3,175,783,704원

⑦ 3,161,874,678원

⑧ 3,147,966,233원

⑨ 3,134,057,387원

⑩ 3,120,149,324원

⑪ 3,106,240,037원

⑫ 3,092,332,361원

⑬ 3,078,423,236원

⑭ 3,064,515,830원

⑮ 3,050,606,540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가. 건축공사 : 2007. 06. 25 ~ 2010. 12. 24

나. 토목공사 : 1차 2007. 07. 01 ~ 2007. 11. 30

2차 2010. 07. 01 ~ 2010. 12. 24

다. 기계설비공사 : 2007. 08. 01 ~ 2010. 11. 30

※ 주요 공정계획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감리원 배치계획은 위 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4. 용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 명단 기입)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사업주체, 감리자 명기

③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감리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시고 별지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는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제4호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 ⑤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 ⑦ 교체빈도(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⑧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⑨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확인)
- ⑩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⑪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 건축사보 증명 :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분도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감리자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 이 기준(건설기술개발,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분에 대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 함.
-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협회에 사실조치로 평가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다만,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함)
- ③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① ② ③ ④ ⑤ 를(1건 이상)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④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접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⑤ 감리자(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등을 평가시,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⑦ 비평가 감리원은 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처리함[단, 신규감리원은 자격요건을 평가하므로 순서 적용 제외(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구분하지 않음)]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2007. 06. 20.(수) (09:00 ~ 12:00) (시간엄수)
-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6.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 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5.10)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① 공고 ⇒ 서류접수 ⇒ 평가(자기평가서·제출서류) ⇒ 예정가격 추첨·입찰서 개봉/순위 선정 ⇒ 이의 접수 및 열람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2007. 6. 22. (금) 18:00까지 제출할 것)
- ③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통보는 유선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 하지 않음.
- ⑥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다. 이의신청 및 열람

- 기 간 : 2007. 06. 20 ~ 2007. 06. 25
(토·일요일 포함하며 토·일요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감리지정신청자(위임장 첨부한 대리인 포함)가 방문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장소 및 열람방법 : 건축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함.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 감리원 현황
 -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7. 예정가격 등의 추첨일시

- 가. 일시 : 2007. 6. 20(수) 13:00부터(5, 6, 7, 9, 10블럭 순으로 개찰)
-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소강당
 - ※ 예정가격 추첨 시 필히 참석하고 연명부에 인감날인 할 것
 - ※ 미참석 또는 연명부에 인감날인 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7-163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 다. 총괄감리원 : 상기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등급이상 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함.
 - 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라. 비상주감리원

- ①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이상 1명만 인정함
- ② 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이 등급미만인 경우 “실격”이며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0”점 처리 함.

바.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유동비율 : 253.69%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10. 기타 유의사항

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5, 6, 7, 9, 10블럭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아파트 신축공사는 감리원을 블럭별 중복 접수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감리원이 2개 이상 낙찰 시 1개 블럭만 인정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및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 2)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을 기준으로하여 공사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감리수행 기간을 산정한 실적을 인정함.

- 3)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 4)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2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바. 예정가격 산출은 원단위 미만은 버림
- 사.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2점)을 부여 합니다.
- 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판정함. 또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평가대상감리원 이외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신규감리원 포함)의 명단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 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 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거.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동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며. 남동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버.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행정정보>고시공고 참조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담당자 유성근 ☎032-453-2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준공일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비평가(1)	건축					
비평가(2)	기계 설비					
비평가(3)	토목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와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 리 원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야 별 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 정 제 재	건축	(-1)		
		토목			(-1)			
		교 체 빈 도		기타설비	(-1)			
				건축	(-0.5)			예) 00(건)
		연 령 제 한	토목	(-0.5)				
기타설비			(-0.5)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 상 주 감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04		'04		
			'05		'05		
			'06		'06		
			합계		합계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
 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
 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
 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
 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5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12(2005.07.08)호 및 제2006-552호(2006.12.15)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6. 12 ~ 2007. 6. 19 (7일간)

2. 사업내역

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7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한화 대표 남영선 ☎ 02)729-1883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 02)2022-5131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 02)729-2468 나. 설계자 : (주)단건축사사무소 대표 박규석 ☎ 032)425-8855 다. 시공자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 02)729-2468 라.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 7블럭 ○ 대지면적 : 49,143㎡ ○ 건축연면적 : 138,323.538㎡ ○ 규모 : 공동주택 7개동(지하 2층/지상 37층) ○ 세대수 : 848세대 ○ 공사기간 : 2007.06.25 ~ 2010.12.24.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 2007.02.23 ○ 사업계획승인일 : 2007.06.05. 마. 사업비 ○ 총 사업비 : 290,538,756천원 ○ 대 지 비 : 131,053,205천원 ○ 총공사비 : 126,889,098천원 -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0원 - 주택 감리대상 공사비 : 108,337,912천원 - 전기공사비 : 11,940,264천원 - 소방, 정보통신공사비 : 6,610,922천원 ○ 간접비 : 32,553,310천원 ○ 부가가치세 : 43,143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예비기준: 2,889,025,431원 (주택감리대상 공사비의 2.66668%) 감리최고예비가격 2,889,025,431원 감리최저예비가격 2,715,683,905원 ① 2,889,025,431원 ② 2,876,643,398원 ③ 2,864,262,356원 ④ 2,851,880,981원 ⑤ 2,839,499,822원 ⑥ 2,827,117,457원 ⑦ 2,814,736,280원 ⑧ 2,802,354,686원 ⑨ 2,789,973,311원 ⑩ 2,777,591,945원 ⑪ 2,765,210,570원 ⑫ 2,752,828,052원 ⑬ 2,740,446,389원 ⑭ 2,728,065,464원 ⑮ 2,715,683,905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가. 건축공사 : 2007. 06. 25 ~ 2010. 12. 24

나. 토목공사 : 1차 2007. 07. 01 ~ 2007. 11. 30

2차 2010. 07. 01 ~ 2010. 12. 24

다. 기계설비공사 : 2007. 08. 01 ~ 2010. 11. 30

※ 주요 공정계획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감리원 배치계획은 위 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4. 용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 명단 기입)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사업주체, 감리자 명기

③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감리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시고 별지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는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제4호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 ⑤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 ⑦ 교체빈도(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⑧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⑨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확인)

⑩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⑪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 건축사보 증명 :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분도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감리자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 이 기준(건설기술개발,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분에 대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 함.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협회에 사실조회로 평가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다만,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함)
- ③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① ② ③ ④ ⑤ 를(1건 이상)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④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접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⑤ 감리자(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등을 평가시,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⑦ 비평가 감리원은 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처리함[단, 신규감리원은 자격요건을 평가하므로 순서 적용 제외(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구분하지 않음)]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2007. 06. 20.(수) (09:00 ~ 12:00) (시간엄수)
-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6.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 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5.10)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① 공고 ⇒ 서류접수 ⇒ 평가(자기평가서·제출서류) ⇒ 예정가격 추첨·입찰서 개봉/순위 선정 ⇒ 이의 접수 및 열람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2007. 6. 22. (금) 18:00까지 제출할 것)
- ③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통보는 유선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 하지 않음.
- ⑥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다. 이의신청 및 열람

- 기 간 : 2007. 06. 20 ~ 2007. 06. 25

(토·일요일 포함하며 토·일요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감리지정신청자(위임장 첨부한 대리인 포함)가 방문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장소 및 열람방법 : 건축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함.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 감리원 현황
 -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7. 예정가격 등의 추첨일시

- 가. 일시 : 2007. 6. 20(수) 13:00부터(5, 6, 7, 9, 10블럭 순으로 개찰)
-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소강당
- ※ 예정가격 추첨 시 필히 참석하고 연명부에 인감날인 할 것
 - ※ 미참석 또는 연명부에 인감날인 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7-163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 다. 총괄감리원 : 상기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등급이상 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함.
- 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 라. 비상주감리원
- ①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이상 1명만 인정함.

② 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이 등급미만인 경우 “실격”이며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0”점 처리 함.

바.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유동비율 : 253.69%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10. 기타 유의사항

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5, 6, 7, 9, 10블럭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아파트 신축공사는 감리원을 블럭별 중복 접수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감리원이 2개 이상 낙찰 시 1개 블럭만 인정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및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2)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감리수행 기간을 산정한 실적을 인정함.

3)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 4)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2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바. 예정가격 산출은 원단위 미만은 버림
- 사.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2점)을 부여 합니다.
- 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판정함. 또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평가대상감리원 이외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신규감리원 포함)의 명단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 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 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거.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동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 결과 상위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며. 남동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며.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행정정보>고시공고 참조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담당자 유성근 ☎032-453-2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준공일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비평가(1)	건축					
비평가(2)	기계 설비					
비평가(3)	토목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m ²)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괄 감리원	등급	경력 및 실적	6			예) 00(년)		
		가점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야별 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감점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령제한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감 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 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04		'04		
			'05		'05		
			'06		'06		
			합계		합계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 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 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6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2007.05.1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6. 12 ~ 2007. 6. 19 (7일간)

2. 사업내역

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한화 대표 남영선 ☎ 02)729-1883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 02)2022-5131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 02)729-2468

나.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세한 ☎ 02)3438-8038

다. 시 공 자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 02)729-2468

라.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 9블럭
- 대지면적 : 76,895㎡
- 건축연면적 : 223,313.928㎡
- 규모 : 공동주택 6개동(지하 2층/지상 50층)
- 세대수 : 810세대
- 공사기간 : 2007.06.25 ~ 2011.02.24.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 2007.02.27
- 사업계획승인일 : 2007.06.05.

마. 사업비

- 총 사업비 : 546,356,995천원
- 대 지 비 : 219,871,158천원
- 총공사비 : 219,779,205천원
 -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0원
 - 주택 감리대상 공사비 : 187,647,485천원
 - 전기공사비 : 20,681,223천원
 - 소방, 정보통신공사비 : 11,450,497천원
- 간접비 : 84,728,712천원
- 부가가치세 : 21,977,920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예비기준 4,944,436,170원
(주택감리대상 공사비의 2.63496%)

감리최고예비가격 4,944,436,170원

감리최저예비가격 4,647,769,999원

- ① 4,944,436,170원
- ② 4,923,245,307원
- ③ 4,902,055,290원
- ④ 4,880,864,508원
- ⑤ 4,859,674,140원
- ⑥ 4,838,483,079원
- ⑦ 4,817,293,350원
- ⑧ 4,796,103,480원
- ⑨ 4,774,912,464원
- ⑩ 4,753,722,402원
- ⑪ 4,732,531,467원
- ⑫ 4,711,341,423원
- ⑬ 4,690,150,848원
- ⑭ 4,668,960,454원
- ⑮ 4,647,769,999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가. 건축공사 : 2007. 06. 25 ~ 2011. 02. 24

나. 토목공사 : 1차 2007. 07. 01 ~ 2007. 11. 30

2차 2010. 09. 01 ~ 2011. 02. 24

다. 기계설비공사 : 2007. 08. 01 ~ 2011. 01. 31

※ 주요 공정계획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감리원 배치계획은 위 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4. 용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 명단 기입)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사업주체, 감리
자 명기

③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감리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 등록
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시고 별지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는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제4호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 ⑤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 ⑦ 교체빈도(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⑧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⑨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확인)
- ⑩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⑪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 건축사보 증명 :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 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분도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감리자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 이 기준(건설기술개발,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분에 대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 함.
-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협회에 사실조화로 평가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다만,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함)
- ③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① ② ③ ④ ⑤ 를(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④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⑤ 감리자(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등을 평가시,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⑦ 비평가 감리원은 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처리함[단, 신규감리원은 자격요건을 평가하므로 순서 적용 제외(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구분하지 않음)]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2007. 06. 20.(수) (09:00 ~ 12:00) (시간엄수)
-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6.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 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5.10)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① 공고 ⇒ 서류접수 ⇒ 평가(자기평가서·제출서류) ⇒ 예정가격 추첨·입찰서 개봉/순위 선정 ⇒ 이의 접수 및 열람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2007. 6. 22. (금) 18:00까지 제출할 것)
- ③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통보는 유선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 하지 않음.
- ⑥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다. 이의신청 및 열람

- 기 간 : 2007. 06. 20 ~ 2007. 06. 25

(토·일요일 포함하며 토·일요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감리지정신청자(위임장 첨부한 대리인 포함)가 방문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장소 및 열람방법 : 건축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함.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 감리원
현황

●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7. 예정가격 등의 추첨일시

가. 일시 : 2007. 6. 20(수) 13:00부터(5, 6, 7, 9, 10블럭 순으로 개찰)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소강당

※ 예정가격 추첨 시 필히 참석하고 연명부에 인감날인 할 것

※ 미참석 또는 연명부에 인감날인 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감리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7-163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총괄감리원 : 상기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등급이상 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함.

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라. 비상주감리원

①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이상 1명만 인정함

② 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이 등급미만인 경우 “실격”이며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0”점 처리 함.

바.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유동비율 : 253.69%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10. 기타 유의사항

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5, 6, 7, 9, 10블럭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아파트 신축공사는 감리원을 블럭별 중복 접수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감리원이 2개 이상 낙찰 시 1개 블럭만 인정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및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 2)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감리수행 기간을 산정한 실적을 인정함.
 - 3)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 4)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2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바. 예정가격 산출은 원단위 미만은 버림
- 사.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2점)을 부여 합니다.
- 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판정함. 또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평가대상감리원 이외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신규감리원 포함)의 명단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 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거.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동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며. 남동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 버.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행정정보>고시공고 참조
-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담당자 유성근 ☎032-453-2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위 치			대지면적	m ²
내용	사업내용	구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비평가(1)	건축					
비평가(2)	기계 설비					
비평가(3)	토목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유동비율	4			예) 00(%)
	건 설 도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외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0.2)			예)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 야 별 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감점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령제한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 상 주 감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04		'04		
			'05		'05		
			'06		'06		
			합계		합계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
 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
 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
 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
 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
 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
 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
 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
 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7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2007.05.1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6. 12 ~ 2007. 6. 19 (7일간)

2. 사업내역

인천소래논현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1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한화 대표 남영선 ☎ 02)729-1883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 02)2022-5131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 02)729-2468 나. 설계자 : (주)티씨엠씨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영 ☎ 032)424-1115 다. 시 공 자 : (주)한화건설 대표 김현중 ☎ 02)729-2468 라.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 10블럭 ○ 대지면적 : 52,262㎡ ○ 건축연면적 : 151,956,967㎡ ○ 규모 : 공동주택 5개동(지하 2층/지상 40층) ○ 세대수 : 556세대 ○ 공사기간 : 2007.06.25 ~ 2010.12.24.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 2007.02.23 ○ 사업계획승인일 : 2007.06.05. 마. 사업비 ○ 총 사업비 : 361,056,494천원 ○ 대 지 비 : 152,567,465천원 ○ 총공사비 : 145,244,475천원 -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0원 - 주택 감리대상 공사비 : 124,009,733천원 - 전기공사비 : 13,667,505천원 - 소방, 정보통신공사비 : 7,567,237천원 ○ 간접비 : 48,720,107천원 ○ 부가가치세 : 14,524,447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예비기준 3,299,154,936원 (주택감리대상 공사비의 2.6604%) 감리최고예비가격 3,299,154,936원 감리최저예비가격 3,101,205,639원 ① 3,299,154,936원 ② 3,285,015,175원 ③ 3,270,876,664원 ④ 3,256,737,132원 ⑤ 3,242,597,699원 ⑥ 3,228,458,671원 ⑦ 3,214,319,656원 ⑧ 3,200,180,728원 ⑨ 3,186,041,520원 ⑩ 3,171,901,187원 ⑪ 3,157,762,258원 ⑫ 3,143,623,743원 ⑬ 3,129,484,121원 ⑭ 3,115,344,778원 ⑮ 3,101,205,639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가. 건축공사 : 2007. 06. 25 ~ 2010. 12. 24

나. 토목공사 : 1차 2007. 07. 01 ~ 2007. 11. 30

2차 2010. 07. 01 ~ 2010. 12. 24

다. 기계설비공사 : 2007. 08. 01 ~ 2010. 11. 30

※ 주요 공정계획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감리원 배치계획은 위 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4. 용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 명단 기입)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사업주체, 감리자 명기

③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감리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시고 별지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는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제4호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 ⑤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⑦ 교체빈도(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⑧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⑨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확인)
- ⑩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⑪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 건축사보 증명 :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분도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감리자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 이 기준(건설기술개발,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분에 대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 함.
-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협회에 사실조화로 평가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다만,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함)
- ③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① ② ③ ④ ⑤ 를(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④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접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⑤ 감리자(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등을 평가시,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⑦ 비평가 감리원은 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처리함[단, 신규감리원은 자격요건을 평가하므로 순서 적용 제외(건축, 기계설비, 토목감리원 구분하지 않음)]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2007. 06. 20.(수) (09:00 ~ 12:00) (시간엄수)
-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6.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 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5.10)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여,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① 공고 ⇒ 서류접수 ⇒ 평가(자기평가서·제출서류) ⇒ 예정가격 추첨·입찰서 개봉/순위 선정 ⇒ 이의 접수 및 열람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2007. 6. 22. (금) 18:00까지 제출할 것)
- ③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통보는 유선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⑥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다. 이의신청 및 열람

- 기 간 : 2007. 06. 20 ~ 2007. 06. 25

(토·일요일 포함하며 토·일요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감리지정신청자(위임장 첨부한 대리인 포함)가 방문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장소 및 열람방법 : 건축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함.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 감리원
현황

●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7. 예정가격 등의 추첨일시

가. 일시 : 2007. 6. 20(수) 13:00부터(5, 6, 7, 9, 10블럭 순으로 개찰)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소강당

※ 예정가격 추첨 시 필히 참석하고 연명부에 인감날인 할 것

※ 미참석 또는 연명부에 인감날인 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감리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7-163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총괄감리원 : 상기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등급이상 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함.

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라. 비상주감리원

① “나”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이상 1명만 인정함

② 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이 등급미만인 경우 “실격”이며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0”점 처리 함.

바.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유동비율 : 253.69%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10. 기타 유의사항

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5, 6, 7, 9, 10블럭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아파트 신축공사는 감리원을 블럭별 중복 접수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감리원이 2개 이상 낙찰 시 1개 블럭만 인정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및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 2)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감리수행 기간을 산정한 실적을 인정함.
 - 3)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 4)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2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바. 예정가격 산출은 원단위 미만은 버림
- 사.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2점)을 부여 합니다.
- 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배치계획 부적합으로 판정함. 또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평가대상감리원 이외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신규감리원 포함)의 명단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거.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동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며. 남동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 버.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행정정보>고시공고 참조
-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담당자 유성근 ☎032-453-2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분율	% %	전화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비평가(1)	건축					
비평가(2)	기계설비					
비평가(3)	토목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회 사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시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 리 원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야 별 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감점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령제한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 감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 전문 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04		'04		
			'05		'05		
			'06		'06		
			합계		합계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 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 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39 호

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6. 27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6. 12 ~ 2007. 6. 27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80나1822	이영석	연수구 연수동 516-9 101호	서울지방법원 (사건99카단86646)	서인선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1 6/4
06터3580	김이남	부평구 부평동 64-20 대림@ 10/4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2001카단2932)	신영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00 화승@ 7/1007
인천30고1629	기명종	남동구 만수동 109-364 경인맨션 101/B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98카단8436)	김종은	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 884 주공@ 54/506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7. 6.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4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 보다 합창단을 성실히 지도하여 가시적인 성과 ('04, '06 전국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를 거양하여 전국에 남동구의 위상을 높여 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휘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지휘자와 합창단의 사기 진작 및 합창단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7년 7월 2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453-213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 : 2007년 월 일

제출자 : 문 화 홍 보 실 장

☐ 제안이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 보다 합창단을 성실히 지도하여 가시적인 성과('04, '06 전국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를 거양하여 전국에 남동구의 위상을 높여 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휘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지휘자와 합창단의 사기 진작 및 합창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여성합창단 지휘자 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7조)
 - 8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인상
 - 연습횟수의 경우 “월 5회 이하”를 “월 5회 미만”으로

☐ 본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사항 :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
- 여성합창단 지휘자 수당 비교표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남동구 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수당 지급기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 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원)

구 분	직 위	지 급 액	비 고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	1,000,000	월정액으로 지급 (다만, 연습횟수가 월5회 미만인 경우에는 10회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반주자	600,000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남동구 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수당 지급기준(제7조)

(단위 :원)

구 분	직 위	연 행		개 정	
		지급액	비 고	지급액	비 고
남동구 여 성 합창단	지휘자	800,000	월정액으로 지급 다만, 연습횟수가 월5회 이하인 경우 에는 10회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1,000,000	월정액으로 지급 (다만, 연습횟수가 월5회 미만인 경우 에는 10회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반주자	600,000		현행과 같 음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 10 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여성합창단 지휘자 수당 비교표

광역단체명	기초단체명	지휘자 보수(원)	비 고
인천광역시	중 구	80,000	1회 기준
	동 구	100,000	1회 기준
	서 구	1,000,000	
	남 구	960,000	
	연수구	1,100,000	
	부평구	80,000	1회 기준
	계양구	7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1,300,000	
	양천구	900,000	
	강동구	1,000,000	
경 기 도	부천시	3,800,000	
	안산시	2,365,000	
	시흥시	1,3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4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 개정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 우리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3. 주요내용

-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53-2363, FAX 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고령자의 나이 : 65세
2. 연간 종합소득 : 1,200만원 이하
3.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써 가액 3억원 이하
4.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분리 과세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역모기지 실수주택에 대한 감면)</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 호의2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고령자의 나이 : 65세 2. 연간 종합소득 : 1,200만원 이하 3.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써 가액 3억원 이하 4.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 로부터 담보된 주택
<u>〈신 설〉</u>	<u>제23조의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 면)</u>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를 받은 지구 내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 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 용하여 분리 과세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4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06. 6. 23. 일부개정·공포 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도시정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남동구청, ☎ 453-2830, FAX 453-283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개정이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06. 6. 23. 일부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안 제31조)
 - ▶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강화(사무실 포함한 연면적)
 - 1) 옥외광고 제작업 시설기준 면적 : 49.54m²이상
 - 2) 옥외광고 대행업 시설기준 면적 : 16.52m²이상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35조)
- 정비 · 수거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38조)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대비 표 : 별 첨

☐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시행령」 제41조, 제46조
- 옥외광고업등록업무 처리지침 통보[도시계획과-4470호(06.6.22)]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 통보 [도시계획과-4712호(06.07.03)]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영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의 [별표5] 중 위반사항의 제1호 “가”목의 (1)(라)와 (2)(라) 및 “나”목의

- (1) (라)와 (2)(라), (3)(라)의 “금액”을 “금액이하”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 별지 과태료 금액의 계산 방법 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8조 중 “주민에게”를 “주민 등에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자는 이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4일까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기 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 기능사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49.54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사무실 등 연면적 16.52 제곱미터 이상

※ 위 기술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연면적이라 함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용면적.

신·구 조문 대비 표

연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u>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u>별표5</u>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의한다.	<u>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u>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u>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7항 규정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u>[별표5]</u>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 표

연 행	개 정 안
제38조(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영 제30조의 2 및 이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현수 막 이외의 현수막을 정비·수거한 <u>주민에게</u> 다음 각 호의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생략)	제38조(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 ----- <u>주민등에게</u> ----- ----- ----- 1. ~ 2.(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현 행	개정안
		부과금액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현행과같음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5만원 30만원 3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5만원 60만원 79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u>금액</u> 이하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현행과같음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2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40만원 49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u>금액</u> 이하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연 행	개정안
		부과금액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u>금액 이하</u>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현행과같음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u>금액 이하</u>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현행과같음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현행과같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연 행	개정안
		부과금액	부과금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u>금액 이하</u>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현행과같음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현행과같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현행과같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연 행	개정안
		부과금액	부과금액
<u>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 이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u>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u>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현행과같음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 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 하고, 네온 류 또는 전광 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원 이하의 범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47 호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보상계획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종 류 : 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
- 규 모 : 주차장 A=1,234.3㎡(주차대수 : 45대).

4. 보상시기 : 2007. 7월 예정

5.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6. 보상대상

- 토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7.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건설교통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협의체결후 현
금보상
- 상기 지번상의 적치물, 지장물 즉시철거 조건으로 지급.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개별 통지**9. 열람기간** : 구보게재일부터 15일간(공고 게재일 : 2007.6.15 예정)**10.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교통과**11. 기타사항**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
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 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 토지조서 : “첨부서류”(종이문서)

토 지 조 서

공사명 :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소재지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차장	도로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	
논현동	562-2	대	1,234.3	1,234.3	1,234.3		1,234.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없	음	
합계			1,234.3	1,234.3	1,234.3		1,234.3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52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인천대공원 ~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장수동 131-5번지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개요 B=5.95m, L=1,677m
- 설계금액 : ₩424,600,000원(추정가액 386,000,000원 부가가치세 38,600,000원)
- 기초금액 : ₩424,600,000원(금사역이천사백육십만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6월 15일(금) 13:00 ~ 06월 25일(월)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6월 25일(월)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면허소기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424,600,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01. 12)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말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68.35% 유동비율 134.13%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설과 토목팀(032-453-272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6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3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서창자이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자 : 조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4블럭
- 연 면 적 : 98,973.942㎡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4층, 7개동, 500세대
- 사 업 비 : 208,956,000천원
- 변경내역
 - 옹벽형식변경 : 보강토옹벽→RC옹벽
 - 우오수라인 배치 변경
 - 단지내 바닥 포장재료 변경 : 아스콘포장→고압블럭 포장
 - 마감재료 일부 변경 등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8. 31. ~ 2009. 2. 28.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합니다.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승인		☐ 대지조성사업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2006-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호				
상 호	(주)한국토지신탁		등 록 번 호	서울시강남구-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96-23-28	
대 표 자	조 창 수		사업자등록번호	110111-1*****	
영업소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대 지 위 치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4블럭		대지면적(㎡)	32,781.1	
건축면적(㎡)	5,450.845		건 폐 율 (%)	16.63	
연 면 적(㎡)	98,973.942		용 적 륜 (%)	219.97	
동수(주/부)	7 / 7		세 대 수	500	
주 택 형 별	민간분양		총 사 업 비	208,956,000천원	
착 공 예 정 일	2006. 8.		사용검사예정일	2009. 2. .	
등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등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1	101동	4,846.006	4	관리동	1,980.979
2	102동	16,636.234	5	통합경비실	136.6
3	103동	16,214.169	6	경비실-1	14.16
	104동	16,514.069		경비실-2	14.16
	105동	4,428.871		기계/전기실	457.875
	106동	6,150.290		지하주차장	22,381.177
	107동	6,979.722		근린생활시설	2,219.63
변경사항	- 옹벽형식변경 : 보강토옹벽→RC옹벽 - 우오수라인 배치 변경 - 단지내 바닥 포장재료 변경 : 아스콘포장→고압블럭 포장 - 마감재료 일부 변경 등				

2007년 6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자 : 인천광역시장

제 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1. 사업계획 승인내역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유형	규모 ㎡	동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사업비	사업승 인일	착공예 정일	준공예 정일
구 분	(주) 한국 토지 신탁	조 창 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도지구획 정리사업지구 24블럭	주택 건설 (분양)	아 파 트	7	200	98,973.942	32,781.1	208,956,, 000천원	2006. 07.11	2006. 08.31	2009. 02.

2.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옹벽형식변경 : 보강토옹벽→RC옹벽
- 우오수라인 배치선형 변경
- 단지내 바닥 포장재료 변경 : 아스콘포장→고압블럭 포장
- 마감재료 일부 변경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